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526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김효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5. 28.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7가단213813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15. 12. 14.경 또는 B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862호, 2015하면2859호,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에서 채권자였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2016. 3. 2.경에는 이미 B와 피고 사이의 거래사실 및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2)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부를 상환하기도 하였고 2015. 11.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그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2014. 5. 22.경 B는 F은행 예금채권, 태국 법인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I'를 양도하여 매각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매각대금 등으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B는 피고에 대한 각 금원지급행위(특히 2014. 5. 22.경) 당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B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4.

인천삼산경찰서에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2016. 3. 2.자로 B의 F은행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B가 대여금 130,523,4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가 이를 다투었고, 2016. 4. 25.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이 내려진 점, ② B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도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 및 이유, 당시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전지방법원은 2017. 1. 12. B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행위, 설명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파산을 폐지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B 및 피고의 금융거래내역, 위 면책불허가 결정 내용 등을 통해 비로소 B의 재산상태 및 B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원고가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무렵 'B가 피고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이 사건에서는 4,8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정당하게 변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B는 피고로부터 2008년경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차용하여 'I' 주점을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B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앞서 본 와 같이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① B가 'I' 주점을 2014. 4.경 양도한 후 수령한 매각대금 약 1억 5,000만 원 중 상당한 액수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8호증의 1 기재에 의하더라도 B가 위 매각대금으로 피고에게 2014. 7. 19.경까지 지급한 금원은 총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14. 5. 22.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03,403,337원(F은행 예금채권)이고 소극재산은 76,783,304원(원고 및 E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인 상태에서 B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번과 같이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3,379,967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점, ③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B의

배우자 G의 공사대금 채권 6,000만 원 및 B의 태국 법인 주식 30,889,600원 상당은 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존재 및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목록 기재 4, 5번 각 금전지급행위는 위 'I' 주점의 매각대금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B와 피고의 인적관계, 금전거래내역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는 별지목록 기재 1번 금원지급행위 중 3,379,967원의 지급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별지목록 기재 2, 4, 5번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각 사해행위 당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혜선

별지

목 록(제1심 공동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1. 2014. 5. 22.자 30,000,000원
2. 2014. 5. 28.자 20,000,000원
3. 2014. 5. 30.자 35,000,000원
4. 2014. 9. 17.자 37,000,000원
5. 2014. 12. 17.자 7,000,000원